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51464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피 고 1. C

2. D

3. E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0. 6. 19.부터, 피고 D은 2020. 7.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29. 체결된 매매계약은 101,149,033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3.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50,574,51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50,574,516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F'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이고, 피고 D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 C은 G의 사장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피고 C은 2017. 5. 17. 광주시 H, I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원고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의료용 기구멸균기와 의료용 공간소독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서울과 경기 지역의 병원, 의원에 의료용 멸균기와 의료용 공간소독기의 판매권을 부여해 줄테니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 늦어도 2017년 연말까지는 내가 직접 의료용 기구멸균기를 제작하여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들은 같은 날 G와 사이에 G로부터 의료용 기구 멸균기, 의료용 공간소독기의 판매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는 같은 달 24.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피고 B는 같은 달 31.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C은 2019. 6. 20.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4233), 위 판결은 피고 C의 항소 및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D은 2019. 3. 29.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E에게 2억 5,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E은 같은 해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J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K주식회)에 대한 피담보채무 148,850,967원을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G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원고들을 기망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 D은 G의 대표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용자인 피고 C이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C이 G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자신은 G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므로 피고 C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G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자 명의를 피고 D으로 되어 있고, G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G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도 피고 D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원고들은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한 점, 달리 원고들이 피고 D이 G의 명의상 대표자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나 보증금을 송금할 당시 피고 D이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님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

게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4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D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E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D의 사해의사 및 피고 E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들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요청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 D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2018. 12. 20. 부산지방법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G로서 피고 D은 위 회사의 대표자인 점, 원고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D의 사해의사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E의 어머니인 L의 소유였고, 그 때부터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L이 낙찰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던 점, L과 피고 E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하였고, 이에 적절한 매매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E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결국 피고 D,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 E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48,850,967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인 2억 5,000만 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48,850,967원을 공제한 101,149,033원의 한도에서의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 D,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01,149,0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가액배상으로 각 50,574,516원(= 101,149,033원 × 1/2,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가액배상금 지급의무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어 판결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단서는 장래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해행위 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판결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므로, 앞서 인정한 연 5%의 범위를 벗어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희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광주시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스라브지붕 15층

1층 431.1996㎡

2층 431.1996㎡

3층 431.1996㎡

4층 431.1996㎡

5층 431.1996㎡

6층 431.1996㎡

7층 431.1996㎡

8층 431.1996㎡

9층 431.1996㎡

10층 431.1996㎡

11층 431.1996㎡

12층 431.1996㎡

13층 431.1996㎡

14층 431.1996㎡

15층 431.1996㎡

지층 432.2536㎡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84.9959㎡

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광주시 대 28014㎡

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8014분의 52.8971. 끝.

